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52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피고, 항소인 A(개명전 이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박효현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22706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6. 21. 체결된 71,011,91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1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2행의 “하였다.”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위 C의 지분에 해당하는 71,011,910원을 수령한 것을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9행부터 제3쪽 1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시점(2019. 4. 24.부터 2019. 6. 21.까지)보다 앞선 2014. 3. 14. 및 2018. 7. 3.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송금행위가 종료된 날인 2019. 6. 2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25. 소외 회사가 위 E은행 및 F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19. 10. 25. 및 2019. 10. 31. 위 각 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는 실질적으로 C가 피고에게 71,011,910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1,011,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71,011,910원을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C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피고로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2019. 4. 24.부터 2019. 6. 21.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6. 27. F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후 다음날인 2019. 6. 28. 위 계좌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71,011,910원을 포함하여 합계 71,399,095원(= 위 71,011,910원 + 387,185원)을 이체한 사실, 위 이체된 돈 중 22,129,644원이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 피고는 2019. 7. 1. 위 계좌로 합계 122,5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잔액 합계 171,769,451원 중 171,468,289원이 소외 회사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피고로의 이 사건 송금행위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간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취득한 돈을 며칠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전부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행위로 취득한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를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